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강대호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76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10월 14일

발 의 자 : 강대호, 권수정, 김기대,
김인제, 김재형, 김정태,
김창원, 김태수, 김희걸,
노승재, 박기열, 박기재,
박상구, 박순규, 송명화,
송아량, 송재혁, 신정호,
양민규, 오현정, 이광성,
이정인, 이준형, 임종국,
장상기, 황규복 의원(26
명)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 근거를 바로 잡으며,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어문 규정 미준수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 근거를 정정함(안 제3조)
- 나.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함

3. 참고사항
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산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폐기물관리법」”을 “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폐기물관리법」”으로, “따라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”을 “따라”로, “에 대하여”를 “에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후생복지에 관한 사항”을 “후생복지 증진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“한, 이에 응하여야”를 “한 이를 따라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광역 폐기물처리시설”을 “광역 폐기물처리시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“위해”를 “위하여”로, “설치해야 할”을 “설치할”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폐기물의 광역관리)”를 “(폐기물의 광역 관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「폐기물관리법 시행」 제5조”를 “법 제5조”로, “위탁”을 “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광역폐기물처리시설”을 “광역 폐기물처리시설”로, “따른”을 “따라”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)”를 “(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6조”를 “서울특별

시가 법 제6조”로, “시가 반입수수료를”을 “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(이하 “반입수수료”라 한다)을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“소요되는”을 각각 “드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이 조례 제6조제2항제2호”를 “제6조제2항제2호”로, “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8조의”를 “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8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5조의2 중 “위해”를 “위하여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제1항의”를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제7호”를 “영 제2조제7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의”를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, “관하여”를 “있어”로, “등,”을 “등에 관하여”로 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39조”를 “시장은 법 제39조”로, “시장은 관계공무원”을 “관계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”을 “사람에게 예산의 범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”를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, “신고에 의하여”를 “신고로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이루어 지도록”을 “이루어지도록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을
“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2.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·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·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·운반에 소요되는 경비

3.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

② 반입수수료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 부과·징수에 의한다.

제5조(생활폐기물의 처리 등)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이 조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을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8조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수집·운반·보관·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5조의2(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 등 지원) 시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를 위해 각 자치구 간 사전 협의 및 통합 조정의 역할을 하고, 자치구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·재정

2. -----

----- 드는 -----

3. -----

드는 --

② -----

-- 따른다.

제5조(생활폐기물의 처리 등) ① -----

----- 제6조제2항제2호-----
-----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8조에 따른 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조의2(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 등 지원) -----
----- 위하여 -----

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6조(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) ①
(생략)

② 제1항의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은
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연탄재·재
활용가능품·대형폐기물은 제외할 수
있다.

1. (생략)
2.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제
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
중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
표5 제3호가목(2)의 방법으로 처리
하는 폐기물
- ③ 제1항의 종량제 시행에 관하여 이
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압축폐기
물,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
물 등,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
정한다.

제8조(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·감독)
법 제39조에 따라 시장은 관계공무
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폐기물처리
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
검사하게 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제9조(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

-----.

제6조(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) ①
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 따른 -----
-----.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영 제2조제7호-----

- ③ 제1항에 따른 ----- 있어 ----

등에 관하여 -----
----.

제8조(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·감독)
시장은 법 제39조----- 관계공무
원-----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9조(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

